#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8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정동만·엄태영·최수진

이인선 • 윤영석 • 김재섭

이상휘 · 이종배 · 김위상

김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를 "제4항에"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벌금에 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본회의나 위원회는 증인 등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거나 제5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한다. 이 경우 고발은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을 요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권) ① ~ ④ (생 략)	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	⑤ <u>제4항에</u>
<u> 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u>	
<u>있으며, 제4항에</u> 따라 서류제출	
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u>벌금에 처한다</u> .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⑥ 본회의나 위원회는 증인 등
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
	<u> 짓증언을 하였거나 제5항의 죄</u>
	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
	은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
	을 요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u>한다.</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